

입법예고

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식생활소비정책과)

1. 개정이유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('25.9.19 시행)에 따라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및 식생활 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규정
(안 제17조 신설)

나. 식생활교육주간의 구체적 시기 및 운영 방법 규정(안 제18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붙임(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
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) 법 제26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2.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
3. 사회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
4.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식생활 교육주간)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(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) 법 제26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</u> <u>2.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</u> <u>3. 사회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</u> <u>4.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</u> <u>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18조(식생활교육주간)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한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주간을 기념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.</u>